

예천군 고시 제2013 - 90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. 02. 14

예 천 군 수



구 분	공작물설치(하수도관거 매설)
하 천 명	지방하천 한천
점 용 자	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(노상리 125-1) 예 천 군 수
위 치	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339번지 외 26필지
점용면적	영구점용면적 - 373.6㎡ 일시점용면적 - 1363.5㎡
점용목적	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매설
사업개요	하수관거 매설(D80~D500mm, L=919.1m)
점용기간	영구점용(2013년 02월 15일 ~ 2018년 02월 14일) 일시점용(2013년 02월 15일 ~ 2015년 05월 23일)